

검역장소의 지정요건(제20조제1항 관련)

1.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지역에 위치해야 한다.
 - 가. 「관세법」 제133조제1항에 따른 개항(開港) 및 같은 법 제134조제1항 단서에 따라 출입의 허가를 받은 장소.
 - 나. 제11조제3호에 따른 통관역 또는 통관장
 - 다.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내륙 컨테이너 기지
 - 라.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국제박람회장
 - 마. 가목부터 다목까지에 해당하는 지역의 인근지역으로서 농림축산검역본부의 지역본부장 또는 사무소장이 정한 장소
2. 검역장소는 다음 각 목의 시설 또는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.
 - 가. 목재류를 검역하는 장소 외의 검역장소에는 검사대가 갖추어져 있고 검역장소가 창고인 경우에는 조명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. 이 경우 검사대 및 조명시설의 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 - 나. 면적 6㎡ 이상의 검역실(하나의 검역장소를 분할하여 지정받은 경우 공동 검역실을 설치할 수 있다)을 설치해야 한다. 다만,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.
 - 1) 냉동창고
 - 2) 목재류만 반입되는 창고 및 목재야적장
 - 3) 포장되지 않은 상태 또는 1톤 내외의 대용량으로 포장된 식물검역대상물품만 반입되는 창고 및 야적장
 - 다. 검역장소가 컨테이너 야적장인 경우에는 식물검역 전용구역(컨테이너의 식물을 꺼내어 검역하는 구역을 말한다)이 설정되어 있을 것. 이 경우 식물검역전용구역의 면적기준은 검역본부장이 정하여 고시한다.
 - 라. 재식용(栽植用) 식물을 반입하려는 검역장소는 인증원과 재식용 식물 검역장소 관리요령을 체결해야 한다. 다만, 항공화물, LCL 화물 및 100kg 이하의 재식용 화물은 제외한다.
3. 검역장소에는 검역 시 안전을 도모하고 검역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사람을 관리책임자로 두어야 하며, 재식용 식물이 반입되는 검역장소인 경우에는 관리책임자 외에 식물검역대상물품의 입고 시 병해충 비산방지 등의 조치를 취할 사람을 식물검역관리인으로 두되, 식물검역관리인은 인증원에 소속된 직원 중에서 위촉해야 한다.
4. 검역장소의 지반은 훈증 소독 시 가스가 누출되지 아니하도록 콘크리트 등으로 포장되거나 찰흙 등으로 단단하고 평탄하게 정지되어 있고 배수구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.
5. 목재류를 검역하는 장소의 외곽에는 검역장소라는 것을 알 수 있도록 경계표시가 되어 있어야 한다.
6. 원목을 검역하는 장소는 「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에 따른 산림으로부터 300미터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. 다만, 검역본부장이 정한 기준에 따른 시설로 차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